

금지된 차별에 대한 요약

교육감 규정 A-830은 교직원, 취업 지원자, 학생과 학부모, 기타 교육청과 업무를 함께 하거나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등 교육청과 관련된 개인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절차를 명시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차별적인 관행을 방지하는데 도움될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완의 여지가 있다.

인종/피부색: 실제의 또는 외견상 인식되는 인종이나 피부색.

장애: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장애 또는 장애 내력. "장애"라는 용어는 임의의 신체적, 의학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손상, 또는 이러한 손상의 병력이나 기록, 또는 타인이 장애로 간주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한다. 고용주가 임의의 피고용인 또는 구직자에게 충분한 편의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어느 개인이 일할 자격을 갖춘 장애자이며, 직무상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면 교육청 의무국 또는 OEO의 장애 코디네이터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성별 (성):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별 (성), 임신 또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상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에는 성 희롱이 포함된다.

"성별"이라는 개념은 또한 성 정체성, 자기 이미지, 외향, 행동 또는 표현이 개인이 태어날 때 규정된 법적인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것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한 사람의 성 정체성, 자기 이미지, 외향, 행동 또는 표현을 포함한다.

민족/출신 국가: 민족/출신 국가: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출신 국가 또는 민족 고유성. 출신 국가는 여러 가지 인종과 종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라도 한 곳의 나라 출신일 수도 있음으로 인종/피부색 또는 종교/신념과 구별된다. "출신 국가"라는 개념은 모든 국가 단체의 일원 및 동일한 조상, 문화 유산 또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룹을 포함하며 또한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다.

유전적 소인: 유전자 테스트나 개인 또는 가족의 과학적 또는 의학적 정보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개인 또는 후손에 나타나는 질병 또는 장애 또는 그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의 위험을 높이는 선천적 유전자나 염색체 또는 유전자 테스트로 결정되는 그와 관련한 변의

시민권/체류 신분: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체류 신분 또는 미국 외의 나라의 시민 신분. 국인 지위 또는 시민권자 지위를 근거로 차별을 하거나, 외국인 지위 또는 시민권자 지위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출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도 불법적 차별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신념: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종교 또는 신념 (종교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련 없는 기본적인 믿음).

교육감 규정 C-606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직원은 종교적인 이유로 타당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 규정 C-630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학생은 종교적인 이유로 타당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이: 실제 또는 외견상 인식되는 나이

혼인 여부: 실제 또는 외견상 인식되는 혼인 여부

체중: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몸무게.

성적 취향: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적 취향. 성적 취향은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의미한다.

과거의 구속/유죄판결 기록: 직업과 범법 행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고용했을 때 불합리한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판결 기록 때문에 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체포나 유죄판결 기록을 점검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 피해자: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현재 또는 예전 배우자,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 연애 또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피해자와 같은 가정에서 연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함께 거주한 사람에 의해 정당방위를 제외한 폭력 행위 또는 위협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범죄 또는 스토킹 피해자는 형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직원은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정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피해자로서의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타당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은 본인이 가정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타당한 조정을 요청하는 직원은 요청을 접수한 후 타당한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정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 및/또는 폭력이나 스토킹의 영향을 받은 실질적 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피해자를 위해 당사자인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도움을 요청했음을 확인하는 경찰 또는 법원 기록, 피해자 서비스 기관의 직원, 에이전트 또는 자원봉사자, 변호사, 종교인 또는 의료 및 전문 서비스 기관에서 작성한 서류가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군복무 여부: 미국 공군, 육군 방위군, 공군 방위군, 뉴욕 해병대, 뉴욕 방위군 및 기타 연방 또는 주정부가 설립한 법적으로 허용된 추가 병력을 포함한 미국 연방 또는 주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

성희롱

A. 직원간의 성희롱

한 교직원에 대한 다른 교직원의 성희롱은 하기 각 항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인 부탁의 요구, 그리고 기타 성적인 속성을 갖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나 대화 등으로 구성된다.

1.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고용 조건으로 변질되는 경우
2. 개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해당 개인에 대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활용되는 경우; 또는
3.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업무수행을 불합리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거나,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

성희롱은 명백한 성적 제의 또는 위협, 성적조롱, 성적으로 유혹하는 언행, 성적인 농담, 외설적인 동작, 포르노물이나 외설적인 영상물 또는 인쇄 자료의 공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잡거나, 쓰다듬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상관없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으며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B.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희롱

OEO는 사안을 담당할 특별수사 담당관에게 사안을 송치한다.

성인인 직원과 학생 간의 성적 접촉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동의에 의한 것이거나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성희롱은 하기 각 항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접근, 성적인 부탁의 요구, 그리고 기타 성적인 속성을 갖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학생의 진급 또는 교육 기회 획득의 조건이 되는 경우
2. 학생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복종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학생을 평가하거나 성적을 결정하는 근거 또는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요인으로 활용되는 경우
3. 이러한 행위가 학생의 교육을 불합리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거나,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

성희롱은 명백한 성적 제의 또는 위협, 성적조롱, 성적으로 유혹하는 언행, 성적인 농담, 외설적인 동작, 포르노물이나 외설적인 영상물 또는 인쇄 자료의 공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잡거나, 쓰다듬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상관없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으며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B. 학생의 성희롱

교육감 규정 A-831 참조 또래 학생 성희롱